

2026년 '나눔장비 이전지원사업' 공고

국가R&D로 구축한 연구장비의 활용 촉진 및 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해 2026년 나눔 장비(유휴·저활용장비) 이전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2026년 1월 28일
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
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장

1. 사업 개요

□ 사업목적

- 기관 내에서 잘 활용되지 않는 연구장비를 보유한 기관과 이를 필요로 하는 기관을 연결하여 연구장비 이전을 지원함으로써 국가 연구장비 활용도 및 R&D 투자 효율성 제고

□ 지원내용

- 지원항목 : 연구장비 이전·설치에 소요되는 비용
 - [사전점검비] 이전신청 연구장비 사전점검 비용(외부 장비전문가 활용비)
 - [장비이전비] 연구장비의 이전·설치 시 발생하는 비용
 - [장비수리비] 연구장비의 이전 후 사용에 필요한 수리 비용(소모품비 제외)
- 지원규모 : 장비 당 취득금액의 20% 이내(최대 6천만원) 지원
 - ※ '25년 대비 '26년의 지원규모가 2배 상향(취득금액 10% → 취득금액 20%)되었으므로, 이전지원금액은 예산소진에 따라 조기 마감 가능

2.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

□ 신청자격

-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, 교육기관, 연구기관, 국가보훈단체, 연구개발 또는 국산 장비개발 관련 중소기업* 등
 - *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(중소기업의 범위)에 따른 기업. 다만, 제작사의 제작장비에 대한 이전신청은 불가함
 - ※ 여러 중소기업에 골고루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1개 기업당 10개 이하 장비(취득금액 3천만원 이상)로 이전지원을 제한하는 「나눔장비 총량제」 실시

<참고> 연구개발 또는 국산 장비개발 관련 중소기업 필수 서류

- 가. 공통 제출서류 : 중소기업 확인서
 - ※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(<https://sminfo.mss.go.kr/>) 검색 확인
- 나. 추가 제출서류 : 아래 항목의 관련 서류 중, 1가지 이상 필수 제출 (접수 마감일 기준, 유효한 경우에 한함)
- 다.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또는 기업재무제표
- 라. 기업현황 설명자료(이전장비 활용 예상실적 포함(사업화, 시제품개발 등))

연번	추가 제출서류	확인 방법 (증빙서류)
①	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보유기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-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,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-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,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 ※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(https://www.md.or.kr/) 검색 확인
②	참여 중인 국가 R&D 과제 협약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접수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국가 R&D 과제협약서 ※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(NTIS, https://www.ntis.go.kr/) 검색 확인
③	「소재·부품·장비 강소기업 100」 선정기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소재·부품·장비 강소기업 확인서 - '소재·부품·장비기업'이란 「소재·부품·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」 시행령 제2조의 '소재·부품 및 장비산업 대상 업종' 분야의 제조기업 ※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(https://www.kibo.or.kr/) 검색 확인
④	소재·부품·장비 전문기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소재·부품·장비 전문기업 확인서 ※ 소재부품종합정보망(https://www.mctnet.org/) 검색 확인
⑤	벤처기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벤처기업 확인서 -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 ※ (사)벤처기업협회(https://www.venture.or.kr/) 검색 확인
⑥	기술혁신형 중소기업(INNO-BIZ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기술혁신형 중소기업(INNO-BIZ) 확인서 - 「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」 제15조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(INNO-BIZ) ※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(INNO-BIZ, https://www.innobiz.net/) 검색 확인
⑦	부처청 공식인증 중소기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정부조직법 제2조(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등)에 따른 부처청에서 연구시설·장비를 활용한 업무추진을 위해 공식적으로 인증하고 있는 중소기업 ※ 정부24 중앙행정기관(https://www.gov.kr/portal/orgInfo?Mcode=11180) 검색 확인

□ 신청제외 대상

- 신청기관, 신청기관의 장, 신청자가 접수일 현재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 제32조에 의하여 참여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신청 불가
- 아래에 해당되는 기관(연구자)일 경우, 신청제외 대상으로 지정

- ☞ 부도 또는 휴·폐업 중이거나 향후 운영이 불확실한 중소기업
- ☞ 전년도 본 사업에서 이전지원 결정된 장비 또는 금액을 취소한 기관(연구자)
- ☞ 이전완료장비에 대한 구동상태확인서 미제출 기관(연구자), 활용실적조사의 의무적(2회) 미이행 기관(연구자)
- ☞ 기타 신청자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

3. 추진절차

□ ZEUS 장비활용종합포털 나눔터(www.zeus.go.kr/sharing)에 로그인하여 장비 등록 및 이전신청

※ 장비등록 및 이전신청은 연중 가능

장비등록	이전신청	이전심의	계약체결	장비이전	사후관리
불용결정 및 ZEUS 나눔터 등록	장비 상태 점검 후 장비 이전신청	이전기관, 지원금액 등 결정	3자 계약체결 (지원금 신청한 경우만 해당)	장비수리 및 이전 진행	이전완료 후 2회 활용실적 제출
양도기관	양수기관	이전심의위원회	양수기관 이전·수리업체 NFEC	양수기관 이전·수리업체	양수기관 NFEC

□ 장비등록 절차

- 대상장비 : 기관에서 활용하지 않는 연구장비 일체
- 등록방법 : 활용하지 않는 연구장비를 자체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를 통해 불용으로 결정한 후 ZEUS 장비활용종합포털 나눔터(www.zeus.go.kr/sharing)에 등록

※ 양도기관은 불용결정 전, 관계 법·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완료하여야 함

□ 이전신청 절차

- 연구장비 보유기관을 방문하여 장비의 상태를 직접 확인한 후, ZEUS 나눔터 (https://www.zeus.go.kr/sharing)를 통해 제출서류를 작성·업로드하여 신청

신청절차	1단계	2단계	3단계	4단계
수행내용	ZEUS 회원가입	온라인 직접입력	파일 업로드	최종완료
작성 및 확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구성원 및 기관 조회 → 미등록 기관 및 개인 회원가입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나눔터▶장비신청하기 신청장비 선택 이전신청서 입력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기본정보 - 장비이전신청서 - 이전장비활용계획서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필수 제출서류 등록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) 장비이전신청서 2) 이전장비활용계획서 3) 견적서 4) 기타 첨부서류 ※ 장비이전신청서 경우, PDF출력 → 직인날인 → 스캔본 업로드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온라인 제출 완료
비고			[별첨양식-1, 2] 및 필수 제출서류	

- 1단계 : 회원가입

- 구성원 및 수행기관이 ZEUS 장비활용종합포털(https://www.zeus.go.kr)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,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시스템 회원가입

- 2단계 : 온라인 직접입력

- ZEUS 나눔터(https://www.zeus.go.kr/sharing) '장비신청하기'에서 장비이전신청서 및 이전장비활용계획서의 상세내용을 입력
- ※ 온라인상 입력된 자료를 토대로 평가가 이뤄지므로 관련 사항 모두 반영 필요

- 3단계 : 파일 업로드

- 장비이전신청서[별첨양식-1]는 PDF 다운받아 출력 → 직인날인 → 스캔 후 업로드
- 이전장비활용계획서[별첨양식-2], 이전·수리비용 견적서, 중소기업 확인서 및 추가 증빙서류(중소기업의 경우) 등 필수 제출서류 업로드
- ※ 중복성검토확인결과서는 https://www.zeus.go.kr/red/에 접속하여 하단의 '중복성검토' 실시 후 결과서 파일 업로드 또는 활용계획서 내 이미지 파일 저장

- 4단계 : 최종완료

- 3단계 완료 후 최종 검토 및 제출 완료
- ※ 신청접수 마감일(ZEUS 나눔터에 별도 공지) 이후 제출서류 수정은 불가하며, 서류 접수 기준에 미달할 경우 접수가 승인되지 않음

□ 이전신청 제출서류

- 장비이전신청서 : 제출 시 직인은 3자 계약서 직인과 동일해야 함
- 이전장비 활용계획서 : 나눔터(www.zeus.go.kr/sharing) 공지 양식
- 중복성 확인 검토서 : 장비 최초 취득금액 3,000만 원 이상인 경우 제출
- 이전·수리비용 견적서 : 동일 항목에 대해 타 업체가 발행한 견적서 2부
- ※ 단일 견적 제출 시 견적서 발행 업체의 단독견적 사유서 제출 필수

4. 평가방법

□ 평가기준

- 서면평가 : 대면평가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일반·지정 나눔형 연구시설·장비
- 대면평가 : 장비당 10~15분 내외의 질의·응답 진행 예정

<참고> 대면평가 기준

- ① 취득금액 3,000만원 이상인 연구시설·장비를 2개 기관 이상이 동일하게 신청(경쟁이 발생)한 경우
- ② 동일 기관이 5점 이상의 연구시설·장비를 신청한 경우
- ③ 취득금액이 5억 이상인 연구시설·장비를 신청한 경우
- ④ 취득금액의 10%를 초과하여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

5. 유의사항

- 연구장비 양수기관은 이전완료 후 해당 연구장비를 기관 자산으로 등록하여야 함 (단, 해체 후 부품 재활용 등급은 제외)
- 양수기관은 이전지원금 외 초과 비용이 발생할 경우 자체 부담
 - ※ 당해연도 이전지원금액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, 이전심의결과를 통보받은 후 30일 이내에 반드시 이전완료확인서 또는 이전완료서류(계약서, 연구용역완료확인서 등)를 제출
- 연구과제비에서 이전비용을 집행할 경우, 이전지원비용을 중복 신청할 수 없으며, 중복수령 시 제재·환수 조치할 수 있음
- 양수기관은 이전완료 후 3개월 이내 '구동상태확인서'를 제출하여야 하며, '활용실적조사' 2회 실시(중소기업의 경우 활용실적이 미흡할 경우 3회 실시)
- 이전받은 연구장비를 당초 제시한 활용 계획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임의 처분(매각, 폐기 등)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, 이전지원 비용 환수 및 향후 사업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

6. 기타사항

- 나눔 마일리지 제도
 - 안 쓰는(유휴·저활용) 장비를 ZEUS 나눔터에 적극적으로 등록하고, 수요자(기관)에게 무상 이전하기 위해 노력한 연구자(기관)에게 마일리지를 제공
 - 50만 마일리지 이상을 적립한 기관(연구자)은 연구시설·장비 유지보수비로 환급 신청 가능(단, 사업비 소진 시 환급 조기 마감)
 - ※ 마일리지 적립 및 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ZEUS 나눔터(zeus.go.kr/sharing/mileageIntro)를 통해 확인
-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본 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, 「국가연구개발 시설·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」 및 「유휴·저활용장비 이전지원사업 운영지침」 등에 따름

관련 법령 및 규정

- 「과학기술기본법」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
- 「물품관리법」과 「국유재산법」의 관리전환 및 무상양여 등에 관한 규정
- 「국가연구개발 시설·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」 “제6장 처분”
- 유휴·저활용장비 이전지원사업 운영지침

문의처

○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(☎ 042-865-3908 / E-Mail: sharing@nfec.go.kr)

- 별첨 양식 : 1. 장비이전 신청서 양식 1부.
2. 이전장비 활용계획서 양식 1부.
- 참고 자료 : 평가지표 및 배점 1부.

4. 장비 이전 예상비용(VAT 포함)

- 총 예상비용 : 10,000,000 원(지원신청금액 + 자체투자금액)
(비용산출은 부가세(VAT) 포함 기준이며, 신청서 및 활용계획서, 견적서상 비용은 일치 요망)

사전점검비	장비이전비	장비수리비	총 합계
0원	4,000,000원	6,000,000원	10,000,000원

- 지원신청금액 : 8,000,000 원
- 자체투자금액 : 2,000,000 원

- ※ 지원신청금액이 없을 경우라도 이전 예상비용 작성 필수
- ※ 비교견적서 제출이 원칙이며(2개 업체 이상), 단일견적서 제출 시 사유 작성 필수
(지원신청금액과 자체투자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견적서 산출 요망)

5. 운영비 확보 계획 : 연간 총 _____ 원

-
- ※ 신청자(또는 신청기관)의 시설·장비 유지보수비 재원 현황 및 마련 계획 등을 자율적으로 작성

6. 운영인력 확보 계획

-
- ※ 전담·겸임인력 등의 숙련도 및 확보 계획 등을 자율적으로 작성

7. 장비 이전 신청자 연구실적

-
- ※ 신청자(또는 신청기관)의 주요연구실적, 수행 연구과제 내역 등을 자율적으로 작성하되 작성내용이 과다하게 많을 경우 최근 5년 이내 실적으로 작성하고 작성기준 명시

8. 이전장비의 기관 내 중복성

- 소속 기관 내 동일장비 보유 여부(ZEUS검색)

한글명 (영문명)	제조사 (모델명)	보유부서	활용범위	중복성에 대한 자체 검토의견
			단독활용	
			공동활용	

※ <https://www.zeus.go.kr/red/>에 접속하여 하단의 '중복성검토' 실시 후 결과서 필수 첨부

9. 장비 이전설치 환경 자가진단(해당사항만 기재)

검 토 사 항	검 토 내 용	판 단	
설치 환경 검토	공간 확보	설치될 장비의 크기에 맞는 공간인가?	적합/미흡/부적합
	전기	설치될 장비에 맞는 용량의 전력은 확보되었는가?	적합/미흡/부적합
	수도	설치될 장비에 맞는 용량의 용수는 확보되었는가?	적합/미흡/부적합
	진동	설치될 장비가 진동에 민감할 경우, 적절한 조치는 취했나?	적합/미흡/부적합
	자기장	설치될 장비가 자기장에 민감할 경우, 적절한 조치는 취했나?	적합/미흡/부적합
	소음	설치될 장비가 소음에 민감할 경우, 적절한 조치는 취했나?	적합/미흡/부적합
	분진	설치될 장비가 분진에 민감할 경우, 적절한 조치는 취했나?	적합/미흡/부적합
	냉·난방	냉·난방기가 필요한 경우, 마련되었나?	적합/미흡/부적합
	화재설비	설치 공간에 화재설비 장치는 완비되어 있나?	적합/미흡/부적합
	위험대비	위험물(유독가스 등)을 취급하는 경우, 대비책은 마련되어 있나?	적합/미흡/부적합
	보안장치	시건 장치가 되어 있어 외부인의 출입을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나?	적합/미흡/부적합
	통신	인터넷 등 통신시설은 확보되었나?	적합/미흡/부적합
	운반	장비운반 시 건물 내 방해 또는 위험 요소가 있나?	적합/미흡/부적합
기술 검토	설치가능	장비를 이전하여 재설치가 가능한가?	가능 / 불가능
	성능구현 가능여부	장비 이전 후 가동 시 목표성능 구현이 가능한가? 목표성능 :	가능 / 불가능
운용 인력	전문인력	장비 운용 시 전문운용인력이 필요한 장비인가?	필요 / 불필요
	보수교육	장비 운용 시 사용자에게 대한 보수교육이 필요한 장비인가?	적합/미흡/부적합
운영	운영허가 조건	방사선 관련 장비를 이전 신청할 경우, 반드시 방사선 관련 장비의 운영 허가 여부 작성 * '가능' 체크시 운영 허가 증빙자료 제출이 필수	가능 / 불가능
설치 공간 사진		장비 설치 시 고려사항 또는 기타 특이사항	

※ 상기 서식에 준하여 작성하되, 필요시 상기 내용 외의 내용 및 자료를 추가 가능

참고 이전·수리비용 견적서 예시

No. -					
견 적 서					
년 월 일		귀하		공 급 자 등록번호 상 호 주 소 업 태 연 락 처 Tel : Fax :	
아래와 같이 견적합니다.					
합계금액(VAT포함) : 일금 원 (₩)					
품 명	규격 및 내역	수량	단 가	공급가액	부가세
1. 장비 이전 비용					
(1) 재료, 부품비	· 운송장래 별첨(1) · 환송로달게 구매 · 고전력 전압케이블 15미터	5	150,000	750,000	75,000
(2) 운반비	· 파견차 이용료(시간) · 장비운송비 · 120km, 2ton화물 1대, 1회 · 보험료(장비운송비 포함)	1	1,300,000	1,300,000	130,000
(3) 기술료	1) 장비 점검 · 2인x4시간(반일) x 80000 · 가동상태 확인 · 유체 리스토 확인, 정압로 작성 · 실압로 유체 대조	1	640,000	640,000	64,000
2) 분해(해체)	· 2인x3시간(반일) x 80000 · 진동시스템 해제 · 진동시스템 필요요강 · 진압 분리, 제어유닛 분리	1	1,280,000	1,280,000	128,000
3) 조립(설치)	· 2인x8시간(반일) x 80000 · Control Unit 분해 결선 · VAC System R/F Compressor 결선 · 압 복화 고장 해제	1	1,280,000	1,280,000	128,000
4) 확인(시험)	· 2인x6시간 x 80000 · 진동시스템 고장 확인 · 스펙트럼 측정	1	960,000	960,000	96,000
(4) 용역비	· 화재, 소음 작성	1	1,440,000	1,440,000	144,000
(5) 출장료	· 3인 2일 x 240000 · 장비차 출장비(2일)	1	1,000,000	1,000,000	100,000
(5) 출장료	· 2일 1인(교통비, 숙박비, 식비)	1	240,000	240,000	24,000
2. 장비 수리 비용					
(1) 재료, 부품비	· 규격내역, 부품가도 별첨(2)				
1) 수리/교체 부품비	· Proceer Chamber Assy · ASMI Int P/N 31024 · Seize de Gas Delivery Assy · Access Inc P/N 6204B	2	15,000,000	30,000,000	3,000,000
	· R/F PCB Assy P/N 520-20-20 · UPS(무정전 전원장치)	2	9,000,000	18,000,000	1,800,000
2) 보조 장치 구매	· Vacuum Evaporator *	1	9,500,000	9,500,000	950,000
(2) 기술료	· 장비 수리/교체(4시간x80000) · 기기 운전 시험(8시간x80000)	1	1,000,000	1,000,000	100,000
(3) 출장료	· 2일 1인(교통비, 숙박비, 식비)	1	320,000	320,000	32,000
	· 2일 1인(교통비, 숙박비, 식비)	1	480,000	480,000	48,000
	· 2일 1인(교통비, 숙박비, 식비)	1	180,000	180,000	18,000
총 계(VAT 포함)					
※ 비 고 :					
견적 담당 : (Tel) (Fax)					

(비용산출은 부가세(VAT) 포함 기준, 항목별 세부 산출내역 구체적으로 반영 요망)

【붙임 자료】

평가지표 및 배점

평가항목	평 가 사 항	배점	평가 점수
이전신청의 타당성	· 신청기관 이전의 필요성	10	20
	· 신청자의 주요 연구 실적(논문, 특허, 연구(장비)개발 실적, 수행연구과제 등)	10	
설치기관의 적정성	· 연구장비 운영비 및 운영(개발)인력 보유	10	25
	· 연구장비 설치 공간 확보	10	
	· 기존 보유 장비와의 중복성 및 연계성	5	
사전점검의 충실성	· 장비 상태 확인 여부 및 충실성	15	25
	· 이전 소요비용의 적정성 및 구체성	10	
활용계획의 우수성	· 활용 목적의 명확성	10	30
	· 활용 계획의 구체성	10	
	· 연구(장비)개발 역량 강화 가능성	10	
합 계	점		